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08.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여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안 제2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타 기금 전입금
-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나. 기금의 용도 (안 제3조)

-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기금의 존속 기한 (안 제4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 부터 5년으로 한다.

라.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7조)

-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마. 위원회의 기능 (안 제8조)

1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 장학금 지급 대상의 선발 및 지원금 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예산조치 : 2008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반영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8. 2. 28 ~ 3. 19)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8. 3. 27)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여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및 타 기금 전입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의한 장학금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적절한 관리와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 업무관련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인

2.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4인

3. 기타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고 덕망 있는 마포구민 4인

⑤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장학금 지급대상의 선발 및 지원금 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명·성명 및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학기금 업무관련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금 관리 대장

(단위 : 원)

[별지 제2호 서식]

기금 출납부

출연금	
정기예금 이자	
소계	

(단위 : 원)